

의안번호	제51호
의결연월일	2017. 6. 26.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6월 12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26일,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. 8. 4.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